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상위법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.
(문화재보호법 제26조 제2호 및 제26조 폐지)

주요골자

- 상위법의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(제28호, 제37호 삭제)

첨 부

-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8조(허가사항)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규칙이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 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행위</u></p> <p>3.-4. (생략)</p>	<p>제28조(허가사항)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. (삭 제)</p> <p>3.-4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7조(양도제한)①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매도하고 할 경우에는 <u>도에서 매입을 원할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매입할 수 있다.</p>	<p>(삭 제)</p>